

서울특별시조례 제4016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중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을 “(민주공원조성 추진인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4101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중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공사국 정원)”을 “(청계천복원공사 추진인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정원중 1명(지방혁신분권업무 추진인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39
------	-----

2004. 9.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2004년 9월 6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경영기획실장 이철수)

가.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등으로 사무의 권한이 변경되거나 사무가 신설되고, 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분리 위임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가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함.

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관리대상시설과 오염물질항목이 확대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되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등 필요조치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확인 등의 환경부장관 사무가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함.

다. 가로수·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도시공원법상의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리 위임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기하고자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 남 중)

□ 총괄부분

- 본 조례는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여러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청장 등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신설된 실내공기질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 가로수 녹지대 설치 및 관리의 권한이 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된 내용을 도시공

원법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자치구청장 및 소속행정 기관에 위임하기 위한 사항임.

□ 세부사항

-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위임(산업국:농수산유통과)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규정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업무와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가 농림부 장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단순 변경내용임. 다만 가락동,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서울 농수산물공사에도 동시위임토록 하여 실질적인 농산물 원산지표시조사 및 시장도매법인 등 수입업자에 대한 강제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도 고려.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무위임(환경국:대기과)
 - 최근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증가 및 건물의 밀폐화등으로 인한 새집증후군과 같은 실내오염 관련 질병 등 환경상 위해를 예방코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4. 5. 30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의 기준준수 확인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과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교육,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의 사용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업무이양되어 시장권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위와관련 관리대상 시설물이 당초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2개(290개소)시설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등 17개(1,085개소)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으로 관리 시설물이 확대되었으며, 관리대상 오염물도 미세먼지, 포름알데이드 등 7개항목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 10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등 관리대상시설이 다원화되고 기존의 대기·수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관리사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시 차원의 직접관리보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지역주민 편익도모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음.
- 가로수·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 녹지에 관한 사무위임(환경국:조경과)
 - 가로수·녹지대설치및관리의권한이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된 내용을 도로법상 규정하는 녹지대와 도시공원법상 규정하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위임규정을 분리하여 자치구청장에 위임하고
 - 세종로, 시청앞의 가로수, 녹지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소장에게,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녹지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안전본부장에게 세분하여 분리 위임함으로써 그동안 자치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관리상에 책임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위임규정을 자치구청장 및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1
------	-----

2004. 9.
재정경제위원회